※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쪽)
■ 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別紙第7号書式］〈改正2022年12月29日〉 (表面)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発給・閲覧申請書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本人が証明の発給を申請する場合は、政府24（www.gov.kr）で無料で発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訪問申請の場合は、申請書を作成せず身分証のみの提示で構いません。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裏面の留意事項を参考にして記入してください。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発給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発給対象者** (委任した者)	성명 氏名	연락처 連絡先
	국내거소신고번호 国内居所申告番号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申請人** (受任者)	성명 氏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연락처 連絡先	발급대상자와 관계 発給対象者との関係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변경 이력 포함 여부 過去の登録番号（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氏名、在留地及び在留資格変更履歴の記載	과거 등록번호 過去の登録番号 [ ]포함 [ ]미포함 [ ]含める [ ]含めない 과거 성명 변경 사항 過去の氏名変更事項 [ ]포함 [ ]미포함 [ ]含める [ ]含めない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過去の在留地変更事項 [ ]포함 [ ]미포함 [ ]含める [ ]含めない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過去の在留資格変更事項 [ ]포함 [ ]미포함 [ ]含める [ ]含めない

수량 **数量**	[ ] 거소신고 사실증명 ( )통 [ ] 居所申告事実証明 ( ) 通 [ ] 거소신고 열람 ( )건 [ ] 居所申告閲覧 ( ) 件

용도 用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第7条及び同法施行規則第11条に基づき、上記の通り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の発給・閲覧を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

○○出入国・外国人庁（事務所・出張所）長 / ○○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 殿

위 임 장
委 任 状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上記の発給対象者（委任する人）は、上記の事実証明の発給・閲覧申請及び受領に関する事項を上記申請人（委任を受けた人）に委任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発給対象者 (委任した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裏面)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1. ※申請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また、 [] には該当する項目に「V」印をつけてください。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の発給・閲覧は、本人や法定代理人、又は本人や法定代理人から委任を受けた人に限ります。

3.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下記の場合は「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第11条第2項に基づき、下記の方が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の発給・閲覧を申請できます。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イ. 行方不明、死亡等により本人が意思表示できない状態、もしくは明らかに本人の利益のために使用されると認められる場合

1)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1) 本人の配偶者、本人の直系尊・卑属又は兄弟・姉妹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本人の配偶者の直系尊・卑属又は兄弟・姉妹［本人の配偶者が死亡した場合］で、1）に該当する者がいない場合のみ該当する]

나.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ロ. 本人である外国国籍同胞との債権・債務関係に関する裁判で勝訴判決が確定した場合、「住民登録法施行令」別表2第3号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金融会社等が延滞債権回収のために必要とする場合、又は当該外国人と債権・債務関係にある場合（期限の経過や期限の利益喪失等により弁済期が渡来した場合に限定し、債務金額が100万ウォン以下の場合は除く）：本人である外国国籍同胞の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の発給もしくは閲覧しようとする債権者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에는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債権・債務関係を立証できる契約書、借用証、手形等は、送金領収書、公証、確定日付等の公的証拠を保証できる書類を一緒に添付してください。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ハ. その他、法務部長官が公益上必要と認める人

4.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委任を受けた場合は、委任状と委任した人の身分証（写し）を添付し、申請人の身分証を提示してください。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の盗用により虚偽の委任状を作成して証明書を申請又は受領した場合、関連法律に基づいて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5.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5. 委任は作成日から6か月間有効です。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